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-11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삭제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해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설치·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10조)
 -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정의와 이용을 위해 구민이 세대별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
- 나. 다량배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시책 추진 근거 마련(안 제8조)
 - 홍대주변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지역에 대한 특화구역 지정운영 사업 추진근거 신설
- 다.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용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 -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문전수거제 도입 초기에 주민들에게 전용용기를 공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
- 라.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개선기한 삭제(안 제18조)
 -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후 개선기한을 주고, 개선기한 만료 즉시 확인해야하는 조항은 환경부의 불합리

한 규제 개선 검토요청이 있었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제조항이므로 삭제

마. 과태료에 관한 근거 법규명 변경(안 제19조)

-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현재의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으로 올바르게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 되는 규제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6. 10. 20. ~ 11. 9. (제출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다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 11. 15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바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사. 비용추계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"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"란 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

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장치를 말한다.

제8조제8항 중 "「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·운반 및 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·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 제16조제1호 중 “별지 제4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의9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4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의10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별지 제48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48호의4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4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의9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4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의10서식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,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"<u>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</u>"란 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장치를 말한다.</p>
<p>제8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-----.</p> <p>⑨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·운반 및 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12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제16조(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)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)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·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) -----

1. -----
----- 별지 제4호의9서식 -----

----- 별지 제4호의10서식 -----

2. ~ 3. (생략)

4.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·재활용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(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)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5.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~ 마. (생략)

제18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별지 제48호의4서식 -----

-----.

5. -----

----- 별지 제4호의9서식 ----- 별지 제4호의10서식 -----

-----.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

조치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,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) ① (생략)

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,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·영·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다.

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,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
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**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조례 제12조제4항

-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 등 물품 구매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용 전용수거용기 구매 집행 금액 : 36,864천원
-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용 전용용기 구매 예산 요구안 : 103,950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계
세입	○							
	○							
	소계(a)							
세출	○음식물류 폐기물 문 전수거 전용용기 구매		36,864	103,950	200,000	0	0	340,184
	소계(b)		36,864	103,950	200,000	0	0	340,184
□ 총 비용(a-b)			36,864	103,950	200,000	0	0	340,184

4. 재원조달 방안 : 일반회계로 편성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청소행정과 조현욱
연락처	02-3153-9207

〈산출기초〉 2017년 예산편성(안)

구분	소요비용 (천원)	산출내역	예산과목
합계	103,950		
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전용용기 구매	103,950	20L: 11,000원×4,800개=52,800천원 10L: 6,000원×3,800개=22,800천원 5L: 4,500원×6,300개=28,350천원	깨끗한 생활환경 조성,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